

20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해외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스펙을 초월하여 꿈·끼·열정만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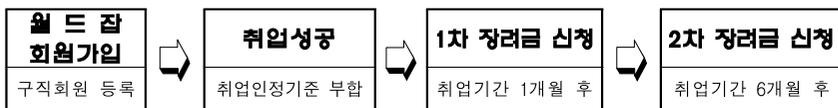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주요내용
2,000명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최대 400만원	· 1차 장려금(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250만원 지급 · 2차 장려금(연속하여 6개월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지원규모(2,000명) 마감기준은 1차 또는 2차 장려금 신청 후 승인순(선착순) 지원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 [붙임1] 참조

3. 지원절차



* 세부 지원절차는 [붙임2] 참조

II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만34세 이하('80.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등),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②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5,998,909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는 취업일자 기준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64,134원**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통계청)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중 8분위 경계값 준용[붙임3 참조]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③ 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④ 2014.9.14이후 해외취업한 자

* 단, '14.4.2~'14.7.1 해외취업자 중 2차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2.28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 '15년 지원대상 자격요건 주요 변경사항 >

'14년 지원대상	'15년 지원대상
①부모 및 본인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인 자	①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인 자
②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여부 불문	②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③'13.9.1 이후 취업자	③'14.9.14 이후 취업자

2.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① 1차, 2차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② 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 ③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 글로벌일자리지원국 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 심의위원 : 국제인력본부내 팀장·차장, 외부 유관기관 인사 등(4~6명)
- 심의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등 장려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간 사 : 해외취업 장려금사업 담당자

○ 환수조치

- 상기 ①~③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중복 지원으로 확인 될 경우 장려금 환수조치

III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 해당국가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불인정
 -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 [붙임4] 참고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 현지 재외공관 확인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 지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자의 경우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해 취업한 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인정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 현황 [붙임5] 참고

- 1 공단 월드잡(www.worldjob.or.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사이트를 통해 알선취업한 자
- 2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GE4U등)를 통해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
- 3 해외인턴사업 참여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인턴수로 후 4개월 이내)

○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직종

- 단, 아래직종은 인정기준에서 제외함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 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에 취업직종(업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 근로계약일 기준 국가별 고시환율 적용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

- * 단,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내 사전구직등록 후 취업자

- * 단,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IV 서류제출 및 지급

□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월드잡 로그인-마이페이지-장려금지원신청'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지급기한 : 월말 기준으로 신청서 취합·승인 후 익월 말일 이내 입금

* 입금 계좌는 본인 명의 국내은행 계좌만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부 또는 모 등)명의 통장 가능

○ 서류제출기간: 2015.12.11(금), 18:00까지

* 단, 사업기간 중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월드잡 팝업 또는 공지사항에 공고)

* 구비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시 후순위로 밀려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신청

○ 월드잡 사이트 내 사전 구직 등록 후 취업한 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취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에 150만원 지급(취업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참조)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1차 지원 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단, 호주 등 한 직장에서 6개월까지만 근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직무분야의 타 업체로의 이직 허용(구직활동기간 14일 별도 부여)

□ 2차 신청

○ 동일 업체에서 연속하여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자에 대해 150만원 추가 지급(재직증명서 제출-1차 확인절차와 동일)

○ 2차 장려금 신청기한 : 취업기간 6개월 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 A취업자 6개월 시점(1.14~7.13) ⇒ 익월 말일(8.31)까지 신청

○ 2차 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① 6개월 이상 근속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 근무시작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반드시 근무시작일자와 발급일자를 연, 월, 일까지 명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1차 장려금 신청시 취업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① 해당국 취업비자 사본

②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2가지 서류 모두 첨부)

i) 근로계약서

▪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근무직종, 임금 수준,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제공 등), 근로 계약체결일,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1,500만원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 임이 서류상으로 증빙 가능할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의 임금수령명세서를 제출

ii) 재직증명서

▪ 기업명, 담당업무, 근무시작일, 재직기간, 서류발급일자, 발급 확인자 성명(서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EPS센터 확인, K-Move센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국/영문 서류가 아닌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단, K-Move센터 및 KOTRA무역관 소재국가는 확정 후 별도 안내 공지

③ 본인 은행(국내) 통장사본

- 공단에서 입금 가능한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인터넷 통장표지 출력본 제출가능)

* 적금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한 가족 통장 제출

④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⑤ 본인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취업전월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⑥ 주민등록표 초본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 중 남자만 제출

- 병역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제출

⑦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 부모·배우자용)

- 건강보험료 및 출입국 조회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 및 등본상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에게 '개인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 용)'를 날인 또는 서명받아 제출

* 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를 제출 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배우자용)'는 생략 가능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류를 추가 제출(붙임 1참조)

V 유의사항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마감 기준은 1차 또는 2차 장려금 신청 후 승인순(선착순)으로 결정

※ 첨부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월드잡 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착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1·2차 장려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려금 지급 취소 가능

▲ 1, 2차 서류마감기한 : 2015.12.11 (18: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1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1개월 경과 후
- 2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6개월 경과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 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www.worldjob.or.kr) 로그인-마이페이지-장려금지원신청' 메뉴

○ 세부적인 내용은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7로 문의 바람

붙임 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 생계비 10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주민센터
② 차 상위계층 대상자중 각종 복지사업 수혜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 생계비 120%이하	· 차 상위계층 확인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③ 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④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⑤ 고졸자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자	· 연수과정 수료 확인서(수료증)	연수기관
⑥ 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 생계비 150%이하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의 가족구성원들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가족구성원 모두 제출	주민센터
⑦ 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가족 부양 증명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⑧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기본증명서(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액(최저생계비 15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150%	소득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3,891,377
	보험료	28,102	47,849	61,900	75,951	90,002	104,052	118,10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2015년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소득*0.0607(보험료율)*0.5(근로자부담)

붙임 2 **사업추진절차**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절차】

순 차	주 체	일 정	수 행 내 용
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구직자	연 중 (반드시 취업전)	○ 월드잡(www.worldjob.or.kr) ☞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
↓			
② 취업성공	구직자	'15.11.11.까지 근무시작	○ 취업증빙서류 확보 및 1차 장려금 신청 준비
↓			
③ 1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15.12.11.(18:00)까지	○ 비자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월드잡 업로드(ZIP파일) * 취업기간(1개월 이상)
↓			
④ 1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말단위 접수 후 익월 말일까지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인당 150만원 * 취업예로청년층 1인당 100만원 추가 지원 ☞ '15년 지원(2,000명)은 예산 범위내 선착순 마감
↓			
⑤ 2차 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구직자	* 취업기간 6개월 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신청	○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월드잡 업로드(ZIP파일) * 연속하여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
↓			
⑥ 2차 장려금 지급 또는 반려	공 단	* 월말단위 접수 후 익월 말일까지 입금	○ 증빙서류 검토후 장려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 충족시 반려 * 1인당 150만원 ☞ '15년 지원(2,000명)은 예산 범위내 선착순 마감

붙임 3 **지원대상자 소득 인정기준 (통계청 참조)**

□ 지원대상자 기준 : 8분위소득 이하인자

○ 소득은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8분위 경계값(월5,998,909원)을 준용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14년 3/4분기 기준)

지표별	전국(A) (2인이상비농가)	도시 (2인이상비농가)	도시근로자 (2인이상비농가)	비고 (A*12=연봉)
p10(원)(1분위)	1,501,931	1,531,326	2,099,117	18,023,172
p20(원)(2분위)	2,277,433	2,292,068	2,759,878	27,329,196
p30(원)(3분위)	2,876,802	2,895,856	3,330,000	34,521,624
p40(원)(4분위)	3,423,357	3,440,374	3,848,357	41,080,284
p50(원)(5분위)	3,998,743	4,000,592	4,374,000	47,984,916
p60(원)(6분위)	4,527,258	4,553,976	4,960,738	54,327,096
p70(원)(7분위)	5,154,624	5,175,813	5,568,684	61,855,488
p80(원)(8분위)	5,998,909	6,004,966	6,430,199	71,986,908
p90(원)(9분위)	7,552,917	7,653,473	8,102,636	90,635,004

* (10분위별 소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
까지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금액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 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10분위 임.

붙임 4 취업비자 인정기준

순번	국가	비자 종류
1	일본	- 취업비자 : 기술, 인문지식국제사무, 기능 - 워킹홀리데이비자
2	캐나다	- 취업비자 : work permit - 인턴비자 :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워킹홀리데이비자 * 캐나다 취업비자정보(http://www.cic.gc.ca/english/work)
3	호주	- 취업비자 : Temporary Work(Skilled) Visa(subclass 457) - 워킹홀리데이비자 * 호주 취업비자정보(http://www.immi.gov.au/Work)
4	싱가포르	- 취업비자 : P pass, Q pass, S pass, work permit
5	중국	- 취업비자 : Z, C (홍콩 : EMPLOYMENT)
6	미국	- 취업비자 : H-1B, H-1C, H-2A, H-2B, L-1, C1/D 등 - 인턴비자 : OPT, J-1
7	뉴질랜드	- 취업비자 : Work Visa, Residence Visa * 뉴질랜드 취업비자정보(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
8	필리핀	- 취업비자 : 워킹비자(9G)
9	인도네시아	- 취업비자 : 311, 312
10	베트남	- 취업비자 : B2, B3
11	말레이시아	- 취업비자 : Employment Pass - 단기취업방문비자
12	아랍에미리트	- 취업비자 : Residence Visa(Employment eVisa)
13	독일	- 취업비자 : Aufenthaltserlaubnis, Aufenthaltsbereshtigung, Blue Card - 워킹홀리데이비자

* 상기 국가 외의 국가에 취업한 경우 해당국의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

붙임 5 워킹홀리데이비자 체결국 현황

순번	국가	모집시기	모집인원(명)	근로기간	취업기간
1	호주	수시접수	제한없음	1사6개월	12개월
2	캐나다	연 2회(6월, 12월)	4,000	제한없음	12개월
3	뉴질랜드	연 1회 (4월)	1,800	1사3개월	12개월
4	일본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10,000	제한없음	12개월
5	프랑스	수시접수	2,000	제한없음	12개월
6	독일	수시접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12개월
7	아일랜드	연 2회(상·하반기)	400	제한없음	12개월
8	스웨덴	수시접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12개월
9	덴마크	수시접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12개월
10	홍콩	수시접수	500	1사6개월	12개월
11	대만	수시접수	400	제한없음	12개월
12	체코	수시접수	300	제한없음	12개월
13	이탈리아	수시접수	500	1사 6개월	12개월
14	오스트리아	수시접수	300	제한없음	6개월
15	영국(YMS)	'15.1.12~16	1,000	제한없음	24개월
16	네덜란드	수시접수	100	제한없음	12개월
17	포르투갈	수시접수	200	제한없음	12개월
18	헝가리	수시접수	100	제한없음	12개월
-	이스라엘	발효예정			
-	벨기에	발효예정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 참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본인용)

해외취업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출입국 기록 및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회할 정보 및 목적

조회정보	목적
출입국 기록	해외근무 사실 확인
건강보험자격,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확인

조회동의 효력기간 : 2016년 말까지

2015. . .

주민등록번호:

이 름 : (서명)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부모·배우자용)

본인은 해외취업장려금 신청자 _____ 의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회할 정보 :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목적 : 소득분위 확인

조회동의 효력기간 : 2016년 말까지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부/모/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서 명

2015. . .